

제24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영등포구청장 제출】



2023. 8. 28.

行 政 委 員 會
專 門 委 員 金 玉 然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역보건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檢 討 報 告 書

1. 경 과

의안 제199호로 2023년 8월 11일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2023년 8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2. 제안이유

「지역보건법」 일부 개정에 따라 인용 조항을 수정하고 [별표] 과태료
부과 기준을 일부 개정하여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과태료 부과대상 삭제(안 제2조)

나. 상위법 개정에 따른 인용조항 변경(안 제3조)

다. 조문 제목 변경(안 제4조)

라.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과기하지 아니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신설 (안 별표)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역보건법」

나. 예산조치: 해당 없음.

다. 협의사항

1) 규제심사: 해당 없음.

2) 부패영향평가·성별영향분석평가·인권영향평가: 해당 없음.

라. 입법예고(2023. 7. 6. ~ 7. 26./20일간) 결과: 의견 없음.

5. 검토의견

○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지역보건법」 이 일부 개정(시행. 2023.3.28.)됨에 따라 현행 조례를 정비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현 조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를 삭제함. 과태료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제34조에 규정되어 있는 바, 입법 경제상 효율성을 도모하고 상위법의 개정에 따른 조례의 불필요한 개정을 줄이고자 현 조례 제2조(과태료의 부과대상)를 삭제함.
- **안 제3조(과태료의 부과기준)**는 「지역보건법」 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기준의 근거조항을 “제34조제1항”에서 “제34조”로 변경함.
- **안 별표(과태료 부과기준)**에서는 안 제3조의 내용을 반영하여 “ 「지역보건법」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니한 자”를 위반사항에 추가하고 그에 따른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금액을 「지역보건법」 제34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3,000만원의 범위 내에서 정함. 그 외 현 조례상 이미 규정되어 있는 위반사항 2개¹⁾에 대해서는 상위법 개정 사항을 반영하여 근거조항을 변경함.

○ 검토 결과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의료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 신설 등 과태료 부과기준을 변경하여 법 기준에 맞게 효율적인 지역보건 의료정보 관리를 하고자 한 것으로 판단됨.

1) 「지역보건법」 제23조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 등을 한 자,
「지역보건법」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참 고 자 료

1 지역보건법

제22조(정보의 파기)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0조에 따라 조사하거나 제출받은 정보 중 서비스대상자가 아닌 사람의 정보는 5년을 초과하여 보유할 수 없다. 이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보의 보유기한이 지나면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또는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수집되어 있는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에게 해당 정보의 파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체 없이 이를 파기하여야 한다. <개정 2023. 3. 28.>

③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보건의료 관련 기관·단체 또는 의료인은 제5조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5년이 지나면 파기하여야 한다. <신설 2023. 3. 28.>

제23조(건강검진 등의 신고) ① 「의료법」 제27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 또는 순회 진료 등 주민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하 “건강검진등”이라 한다)를 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지역을 관할하는 보건소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 의료기관이 「의료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의료기관 외의 장소에서 지역주민 다수를 대상으로 건강검진등을 하려는 경우에도 제1항에 따른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③ 보건소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제29조(동일 명칭 사용금지) 이 법에 따른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아닌 자는 각각 보건소, 보건의료원, 보건지소 또는 건강생활지원센터라는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34조(과태료) ①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 또는 자료를 파기하지 아

니한 자에게는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신설 2023. 3. 28.>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23. 3. 28.>

1. 제2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신고하고 건강검진등을 한 자
2. 제29조를 위반하여 동일 명칭을 사용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시장·군수·구청장이 부과·징수한다. <개정 2023. 3. 28.>